



건강보험심사평가원



수신자 : 대한의사협회장
(경유)

제 목 : ‘플루코나졸’ 비용효과적인 함량 사용대상 의약품 적용 관련 안내

1.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관련근거
 - 가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09호('17.7.1.) 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일부개정”
 - 나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62호('22.11.29.) “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」 일부개정 안내”
3. 위와 관련, 급여목록에 등재된 ‘플루코나졸’ 성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용효과적인 함량 사용 대상 의약품으로 적용됨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- 대상 의약품: ‘플루코나졸(fluconazole) 50mg’ 저함량 배수처방(3배수)
- 적용 일자: 2023년 2월 1일. 끝.

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


수신자

결재	담당 임희영	팀장 김현숙	부장 유희영	실장	전결 12/13 김옥봉
----	--------	--------	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-

협조

시행 DUR관리부-2988 (2022.12.13.) 접수 ()
 우 26465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(반곡동) / www.hira.or.kr / 비공개(7)
 전화 033-739-1711 전송 033-811-7375 /yimhypyio@hira.or.kr